

● 제303회 ●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제10차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장애인활동지원인력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2801)

2021. 12. 17.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이영실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801

I. 조례안 개요

1. 제안경위

- 가. 제안자 : 이영실 의원 대표발의(외 10명)
- 나. 제출일자 : 2021년 10월 15일
- 다. 회부일자 : 2021년 10월 20일

2. 제안이유

-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장애인 돌봄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장애인활동지원인력 대부분이 열악한 근로 조건에 놓여 있음. 이로 인한 돌봄의 질 저하가 우려되지만 관계법령에 구체적인 개선책은 미비하여,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처우 개선에 관한 조례 제정이 필요함.
- 또한,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근로환경 및 권익을 향상시킴으로써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할 필요성이 있음.

3. 주요내용

- 가.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제5조)
- 나.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을 규정함(안 제6조)
- 다.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II.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이문성)

1 제정안의 취지

- 본 조례 제정안은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장애인 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근로환경 및 권익을 향상시키고자 제안되었음.
- 제정안은 8개의 본칙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먼저, 조례의 목적(안 제1조)은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정의규정(안 제2조)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뜻을 명확히 밝히고 있음.
 - 시장의 책무(안 제3조)로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안 제4조), 실태조사 및 처우개선 사업 등(안 제5조~안 제6조),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권리보장(안 제7조)등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조례안의 조문 배열>

제1조(목적)	제5조(실태조사)
제2조(정의)	제6조(처우개선 사업 등)
제3조(시장의 책무)	제7조(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권리보장)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8조 (시행규칙)
	부 칙

가. 총칙규정(안 제1조~안 제3조)

- 본 조례안은 총칙규정에서 목적(안 제1조)과 용어정의(안 제2조), 시장의 책무(안 제3조)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 장애인활동지원인력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 등에 필요한 기본적, 총괄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에서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은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1) 제2조제7호에 따라 제2조제6호의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소속되어 수급자에 대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어 상위 법령과 상충될 여지는 없으며,
-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어 제정안의 입법취지에 부합할 수 있다고 하겠음.

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활동지원급여”란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3. “수급자”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로 인정되어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예정이거나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활동지원사업”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에 따라 수행하는 활동지원급여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5. “부양의무자”란 수급자(제6조제1항에 따른 신청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자의 1촌 이내 직계 혈족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 및 그 밖에 수급자의 생계를 책임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6. “활동지원기관”이란 제20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7. “활동지원인력”이란 활동지원기관에 소속되어 수급자에 대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나.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안 제4조~안 제5조)

-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해 3년마다 근무환경 개선 계획 등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근무환경·처우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한 것은, 주기적인 현황파악 등을 통해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으로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한 조항으로 사료됨.
- 또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서도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서울시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 처우 개선에 대한 형평성 있는 정책 수립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다. 처우개선 사업 등(안 제6조)

- 조례안 제6조는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명시한 것으로, 이를 통해 처우개선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 및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조항으로 판단됨.

라.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권리보장(안 제7조)

- 조례안 제7조는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시장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한 것으로,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노동환경개선과 권익 보호를 위한 조항으로 판단됨.

3 집행부 및 관련단체 의견

가. 집행부

-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필수 돌봄 노동자인 장애인 활동지원인력 처우개선과 권익향상을 위한 조례 제정 건으로, 상위 법령 간 상충 등 별도 쟁점사항은 없으며, 조례 내 강행규정으로 신설된 실태조사 수행과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나.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총연합회

-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총연합회에서는 별도로 반대하는 조항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다.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 본 조례안과 관련한 의견조회에 대하여,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에서는 별도회신이 없었음.

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활동지원사지부

-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활동지원사지부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인력 대한 처우개선이 필요하므로 찬성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4

종합의견

- 현재 서울시에는 약 1만 9천명의 장애인활동지원사가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 장애인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돌봄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봄 서비스 제공 인력의 근로조건은 크게 개선되지 못한 실정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문 의 처

류민국 입법조사관 (02-2180-8140)